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총 계	6,390,954,930	191,728,647
일반 회 계	5,130,320,000	153,909,600
특별 회 계	1,260,634,930	37,819,047
공기업특별회계(지역개발기금)	905,950,209	27,178,506
기 타 특 별 회 계	354,684,721	10,640,541
· 학 교 용 지 부 담 금	23,323,000	699,690
·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	236,005,000	7,080,150
· 지 역 자 원 시 설 세 특 별 회 계	2,260,000	67,800
· 소 방 안 전 특 별 회 계	93,096,721	2,792,901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,990,209천원으로 하고

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5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7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공무원 기준인건비
- 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-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- (4) 재해대책 및 복구비